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69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조경태·한지아·김재섭

배현진 • 백종헌 • 김 건

안상훈 • 박정하 • 박성훈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

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제98조 및 제99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 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 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적국,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국민경제·시장질서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 2.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기술

제99조 중 "敵國"을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 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적국,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국민경제· 시장질서 또는 국가의 안전보 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 도 제2항의 형과 같다.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第99條(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 益을 害하거나 <u>敵國</u>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 <u>기</u> | <u>술</u> | | | | | | | |
|---|----------|----------|----------|----|----|---|----|-----|---|
| 2 | | 국민 | 경제 |]적 | 효고 | 가 | 크고 | - ' | 연 |
| | <u>관</u> | 산약 | 널 에 | 미 | 치는 | 파 | 급효 | 과) | 가 |
| | <u>큰</u> | 기 | <u>술</u> | | | | | | |
| _ | | _ 、 | | > | | | | _ 、 | _ |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

 성이 높은 기술

| 399條(- | 一般利敵) | | |
|--------|-------|-----------|----|
| | | | |
| | | -적국이나 | 외국 |
| 또는 9 | 리국인의 | <u>단체</u> | |
| | | | |
| | | | |